

# 회비 및 수수료규정

제	정	1979. 08.	25.
개	정	1979. 12.	14.
개	정	1981. 07.	23.
개	정	1982. 12.	23.
개	정	1983. 12.	17.
개	정	1988. 01.	08.
개	정	1993. 05.	21.
개	정	1993. 10.	28.
개	정	1995. 02.	15.
개	정	1997. 10.	22.
개	정	1998. 03.	04.
개	정	2000. 06.	22.
개	정	2001. 04.	27.
개	정	2002. 07.	02.
개	정	2008. 03.	17.
개	정	2008. 12.	29.
개	정	2009. 05.	21.
개	정	2011. 05.	01.
개	정	2012. 06.	21.
개	정	2013. 03.	27.
개	정	2014. 06.	24.
개	정	2014. 10.	31.
개	정	2016. 06.	15.
개	정	2016. 11.	21.
개	정	2019. 02.	11.

## 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정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협회의 회비사항과 정관 제33조에 의한 제수수료를 징수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협회는 회비 및 수수료에 관하여는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.

## 제2장 회 비

**제3조(회비의 종류)** 회비는 이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

1. 일반회비

가. 입 회 비: 회원가입시에 납부하는 회비

나. 기본회비: 매년 기본적으로 균일하게 부과하는 년회비

다. 통상회비: 매년 전년도의 엔지니어링사업기성금액에 따라 부과하는 년회비

2. 분 담 금 : 공동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해당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비

3. 특별회비 : 찬조금, 기부금등

**제4조(회비의 부과)** ①일반회비는 별표(1), 별표(2) 일반회비산출기준에 의하여 부과한다. (단서 삭제, 2008.12.29. 개정, 2011.5.1.)

②기본회비는 매년 1/4분기 중에 부과하며, 통상회비는 매년 9월말까지 부과한다. (개정, 2008.12.29. 개정, 2014.06.24.)

③통상회비는 신고업무처리규정 제14조에 의거 제출된 국내분 엔지니어링 매출실적(엔지니어링사업기성금액)에 따라 부과한다. 다만, 매출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회원사의 통상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. (개정, 2008.12.29. 개정, 2009.5.21. 개정, 2016.06.15.)

④제3항에 의거하여 회원에게 부과된 당년도 통상회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부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정정요청을 하여야하며, 회장은 이를 검토 후 기부과된 통상회비를 정정 부과할 수 있다.(신설, 2016.06.15.)

⑤분담금 및 특별회비는 그때마다 별도로 정하여 부과한다.

**제5조(회비의 감면)** ①특별회원에게는 통상회비를 면제한다.

②회비의 감면에 대하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 단, 100만원 이하 회비의 감면은 회장이 정한다.(개정, 2014.10.31)

**제6조(회비의 납부)** 회비는 다음에 의하여 납부한다.

1. 입회비는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납부하여야 한다.

2. 기본회비 및 통상회비와 분담금 및 특별회비는 그때마다 정하는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. (개정, 2019.02.11)

3. (삭제) (2019.02.11)

**제6조의 2(회비의 반환)** 회원은 정관 및 본 규정에 의거 납부한 제 회비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. (개정, 2019.02.11)

**제7조(회비징수방법)** ①회비의 부과·통지는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

②회비를 징수하였을 때에는 소정의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

**제8조(징수대장)** 회비징수 담당자는 년도별로 회비의 종류에 따라 부과 및 징수한 내용을 명시한 회비징수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.

**제9조(회원의 자격정지)** 회원이 2년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, 엔지니어링사업기성액(매출액)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원자격이 정지된다. 단, 미납회비를 납부하거나 엔지니어링사업기성금액(매출액)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회원자격을 회복한다.

**제10조(수수료)** ①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가 처리하는 제반확인, 증명, 추천 및 정부 등의 위탁업무에 관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. (개정, 2009.5.21.)

②수수료는 서류교부와 동시에 징수한다.

**제11조(제수수료의 징수대상 및 기준)** ①협회가 징수하는 제수수료의 부과 대상 및 금액은 별표(1), 별표(2)와 같다. (개정, 2009.5.21. 개정, 2011.5.1)

②전항의 부과대상 및 금액을 정함에 있어 회원과 비회원을 차등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제1조 이 규정은 1979. 10. 1로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제1조 이 규정은 1993. 5. 26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) 이 규정 시행당시의 회원사는 이 규정에 의한 입회비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. 다만, 이 규정 시행 후 2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## 부 칙

제1조 이 규정은 이사회가 승인한 날 1997. 10. 22로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(1998. 3. 5)

제1조(시행일)제4조 제1항 단서조항에 의한 98년도 일반회원에 대한 신규입회시 입회비는 98년도 제3차 이사회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.

## 부 칙

제1조 이 규정은 이사회가 승인한 날 2000. 6. 22로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제1조 이 규정은 이사회가 승인한 날 2001. 4. 27로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제1조 이 규정은 이사회가 승인한 날 2002. 7. 2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) 제9조 단서조항의 회원자격정지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제1조 이 규정은 이사회가 승인한 날 2008. 3. 17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(2008.12.29.)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(2009.5.21.)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(2011.5.1.)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.3.30.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.6.21.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(2013.3.27.)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(2014.6.24.)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(2014.10.31.)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(2016.06.15.)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(2016.11.21.)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(2019.02.11.)부터 시행한다.  
다만 <별표2> 경력관리기술자 회비 및 수수료 산출기준에 따른 엔지니어링  
기술자 비회원 신고수수료 및 경정수수료는 2020.01.01부터 시행한다.

<별표 1> (개정, 2019.02.11)

## 사업자 회비 및 수수료 산출기준

### I. 엔지니어링업 사업자

#### 1. 회비

구분	금액		비고
신규입회비	4,500천원		-
분야추가	300천원		-
기본회비	400천원		년 1회
통상회비	상한	10,000천원	년 1회 (엔지니어링사업 기성금액별 회비 비율에 따름)
	하한	100천원	

#### ◦ 엔지니어링사업 기성금액별 회비비율

엔지니어링사업 기성금액	회비비율
3억원 이하	65 / 100,000
3억원 초과 ~ 10억원 이하	195천원 +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5 / 100,000
10억원 초과 ~ 50억원 이하	580천원 +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 / 100,000
50억원 초과 ~ 100억원 이하	2,380천원 + 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 / 100,000
100억원 초과	4,130천원 + 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5 / 100,000

주)“엔지니어링사업 기성금액”이라 함은 전년도 국내 엔지니어링사업의 원청 및 하청 기성금의 연간총액을 말한다.

#### 2. 수수료

구분	단위	수수료		비고	
		회원	비회원		
신규신고	개사	면제	50천원	-	
분야추가신고	건	면제	30천원	-	
지위승계신고	건	면제	50천원	-	
변경신고	건	면제	5천원	기술인력 변경 등 각종 변경신고	
기술자보유증명 및 경영상태 확인서	부	1천원	5천원	-	
수주(준공) 실적 확인서	일반문서	부	12천원	60천원	-
	전자문서	부	6천원	30천원	-

## II. 엔지니어링컨설팅업 사업자

### 1. 회비

구분	금액		비고
신규 입회비	1,500천원		-
분야추가	100천원		-
기본회비	150천원		년 1회
통상회비	상한	10,000천원	년 1회 (엔지니어링사업 기성금액별 회비 요율에 따름)
	하한	100천원	

※ 엔지니어링사업자 회원이 엔지니어링 컨설팅업을 추가 취득한 경우 다음과 같이 부과함

- ① 신규입회비 : 30만원으로 감경 부과
- ② 기본회비 : 취득한 당해 년도만 면제

### 2. 수수료 : 엔지니어링업사업자 수수료와 같음

## III. 특별회원 회비

구분	금액	비고
신규입회비	2,000천원	-
기본회비	1,000천원	년 1회



<별표 2> (개정, 2019.02.11)

## 경력관리기술자 회비 및 수수료 산출기준

### I. 엔지니어링 기술자

#### 1. 회원

항 목	기 준	수 수 료	비 고
입 회 비	명	50,000원	최초등록시
기본회비	명	20,000원	년 1회
엔지니어링기술 경력증	1부	8,000원	재교부시
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증명서	1부	1,000원	4매 이하
	1부	1,500원	4매 초과
엔지니어링기술자 보유증명서	1부 (10명 이하)	2,000원	상한금액을 15만원으로 함
	1부 (10명 초과)	2,000원 + 초과 1명당 200원	
참여기술자 경력확인서	1부	1,000원	4매 이하
	1부	1,500원	4매 초과

※ 경력증명서 및 참여기술자 경력확인서 온라인 발급수수료는 매수에 상관없이 1,000원

#### 2. 비회원

항 목	기 준	수 수 료	비 고
신규 등록비	명	50,000원	최초등록시
신고 수수료	기술경력 (건)	6,000원	상한금액 90,000원
경정 수수료	기술경력 (건)	30,000원	상한금액 150,000원
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	기준은 회원과 같으며, 수수료는 회원의 5배		재교부시
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증명서			-
엔지니어링기술자 보유증명서			
참여기술자 경력확인서			

## II. 건설 기술자

### 1. 회원

항 목	기 준	수 수 료	비 고
입 회 비	명	50,000원	최초등록시
기본회비	명	20,000원	년 1회
건설기술 경력증	1부	8,000원	재교부시
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	1부	1,000원	4매 이하
	1부	1,500원	4매 초과
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	1부 (10명 이하)	2,000원	상한 금액을 15만원으로 함
	1부 (10명 초과)	2,000원 + 초과 1명당 200원	
참여기술자 경력확인서	1부	1,000원	4매 이하
	1부	1,500원	4매 초과

※경력증명서 및 참여기술자 경력확인서 온라인 발급수수료는 매수에 상관없이 1,000원

※기술자 이관시 이관인 월할 계산 후 연회비 부과, 이관출 월할 계산 후 환불(해당 시점 차기월부터 적용)

### 2. 비회원

항 목	기 준	수 수 료	비 고
신규 등록비	명	50,000원	최초등록시
신고 수수료	기술경력 (건)	6,000원	상한금액 90,000원
경정 수수료	기술경력 (건)	30,000원	상한금액 150,000원
건설기술 경력증	기준은 회원과 같으며, 수수료는 회원의 5배		재교부시
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			-
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			
참여기술자 경력확인서			